



공지  
2010년 1월 8일

Joel I. Klein  
Chancellor

## 교육감 규정서

번호: A-812

범주: 학생

주제: 음식 판매 관련

### I. 주제에 관한 설명 및 고려 대상으로 제안된 내용의 목적.

교육감 규정서 A-812는 2009년 6월 29일자 규정을 대체합니다. 새로 개정된 규정서는 학생, 학교 및 학부모 교사회(PTA) 기금 모금 활동을 위한 음식 판매에 대해 제창한 것입니다. 학생들이 카페테리아를 제외하고 승인된 음식을 학교 수업 일에 언제든지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. 또한 PTA는 카페테리아가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고 교육감 규정 A-610 및 A-660을 준수한다면 승인되지 않은 음식을 판매하는 기금 모금 행사를 매월 실시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본 규정서는 교육감이 학교 시스템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한다면 본 규정서의 어떤 조항도 예외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.

### II. 제안된 내용의 전체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는 곳에 관한 정보

제안된 내용의 전체 내용은 다음의 PEP 웹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:  
<http://schools.nyc.gov/AboutUs/leadership/PEP/publicnotice/default.htm>

III. 고려 대상이 되는 내용에 관해 잘 알고 있는 관련 내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고려 대상이 되는 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뉴욕시 학군 대표의 성명, 담당실, 주소 이메일 및 전화번호.

성명: Eric Goldstein  
담당실: Office of School Food  
주소: 44-36 Vernon Blvd. - Room 413  
이메일: [SchoolFoodPolicy@schools.nyc.gov](mailto:SchoolFoodPolicy@schools.nyc.gov)  
전화: 212-374-0208

IV. 고려 대상으로 제안된 내용에 관한 투표가 이루어 질 위원회의 PEP 회의 날짜, 시간.

2010년 2월 24일  
6:00 P.M.  
M.S. 131  
100 Hester Street  
Manhattan, NY 10002

52 Chambers Street • Room 320 • New York, NY 10007  
Telephone: 212-374-0209 Fax: 212-374-5588